

## 안전진단대행업·안전관리대행업 양도·양수 신고서

\*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| 접수번호        | 접수일      | 처리기간                | 3일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양도인         | 상호(명칭)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성명(대표자)  | 사업자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) |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양수인         | 상호(명칭)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성명(대표자)  | 사업자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) |    |
|             | 주소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사업내용의<br>표시 | 사업의 종류   | 등록번호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양도·양수 가격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| 양도·양수 사유 |                     |    |

「해사안전법」 제21조제2항 또는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진단대행업·안전관리대행업의 양도·양수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고인(양수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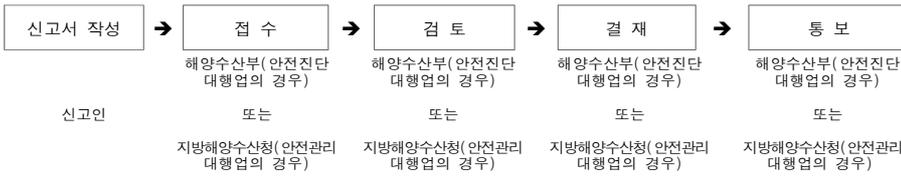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(전화번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)

**해양수산부장관(    지방해양수산청장)**    귀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                      | 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·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| 수수료<br>없음 |
| 해양수산부<br>(지방해양수산청)<br>확인사항 |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       |           |

### 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